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42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김주영·허성무·김태선

이학영 • 박홍배 • 이용우

이기헌 • 박해철 • 송옥주

김성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정 이후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 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더 이상 대리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취약계층 근로자는 단지 수사절차라는 이유만으로 수임료를 중복 지출하여 변호사를 새로이 선임하거나 홀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함.

나아가, 새로 선임된 변호사는 사건을 처음부터 파악해야 하며, 이에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속하게 노동행정을 처리하기 어렵고, 근로감독관의 업무도 과중되는 바, 신속·정확한 노동행정 처리와 근로감독관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공인노무사의 진술조력권이 필요함.

이렇듯 진정사건 진행 중 고소장·고발장이 접수되거나 범죄인지 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수사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공인노무사 의 진술 조력권을 부정한다면, 취약계층 근로자가 수임료의 부담 등으 로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오히려 경제적 우위에 있는 악덕 사업 주 등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등 반사적 이익을 취하며, 취약계 층은 실질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이에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고소·고발 등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 록 하고자 함(안 제2조). 법률 제 호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이 제기된 후 고소사건·고발사건·인지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참여 및 의견 진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	제2조(직무의 범위) ①		
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			
행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7.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방고		
	용노동관서에 진정사건이 제		
	기된 후 고소사건・고발사건		
	•인지사건으로 전환되는 경		
	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참		
	여 및 의견 진술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